

## 국내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 제도 비교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2012년 12월 8일 접수 · 2013년 3월 4일 수정 · 2013년 3월 7일 승인)

### Comparison of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Bong Kyu Yoo\*

College of Pharmacy, Gachon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8, 2012 · Revised March 4, 2013 · Accepted March 7, 2013)

**Background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gulations o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Specific aim wa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ory system governing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particularly on naming of the subjects, method of the examin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ss or fail. **Metho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on the examination system were retrieved from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Results:** Two major regulatory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license examination systems. Firstly, the regulation on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was rul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parent law (Pharmacy Law) while it was ruled by enforcement regulation of parent law (Medical Law). Secondly, minimum grade requirement for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differently set up: 40% for each single subject in pharmacist and average of 40% for each group of several subjects in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clusion:** Since pharmacist profession has drastically changed from drug-makers to drug-users during the recent decades, it is desirable to have the regulations on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system amended in harmon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and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wo-step examination for pharmacist license appears worthwhile to implement for balancing the two key functions of the pharmacist being drug-makers and drug-users.

□ Key words -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healthcare professionals, Pharmacy Law, regulatory system, enforcement regulation

우리나라 약학대학은 2009년에 학제가 6년제 개편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국 약학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약학대학은 학제개편의 기본취지인 전문직업 지향적이며 약사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1965년 12개 시험과목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6년제 학제 졸업자에게 적용할 시험제도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sup>1-4)</sup> 특히 현행 약사면허 국가시험에 의약품의 조제, 약료 및 복약지도에 관한 지식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 약사면허 시험과목이 세계적 추세에 비

교하여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직능 수행과도 동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약사직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sup>5,6)</sup>

한편, 약학대학 교육내용과 약사직무 및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약사 직무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들이 발견되었다.<sup>7)</sup> 첫째, 약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상당수준의 전문지식과 스킬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에 입사하는 신입약사의 경우, 종합병원의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전문화된 선배 약사들로부터 코칭을 받고 잘 갖추어진 병원내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실수를 예방하며, 전문지식과 스킬을 높여나가고 있다. 셋째, 그러나 약국에 근무약사로서 시작하는 약사의 경우, 선배약사로부터 틈틈이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학습하는

Correspondence to :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406-79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91

Tel: +82-32-899-6415, Fax: +82-32-820-4829

E-mail: byoo@gachon.ac.kr

것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약사는 약사면허 취득 시 추가적인 학습이 없어도 최소한 약국이나 중소병원에서 그 맡은 기능을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에 들어오는 신입약사 인력은 약사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된 배경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자 함이었으므로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그 취지에 맞게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6년제 약학대학 교과과정의 특징은 임상약학에 대한 교육과 실무실습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도 이에 부응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약학대학의 6년제 교육과정 중 마지막 학년차에는 실무실습현장에서 1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현장에서 학습되는 약사직능 수행 관련 전문지식, 스킬 및 태도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에 관한 현행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약사 및 의료인면허 시험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률 조항으로 규정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에 소재한 약사 또는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에게 적용하는 면허시험으로 제한하였으며 외국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은 제외하였다. 또한 국가시험에 대하여 법령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시험과목별 출제문항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연구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국내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에 대한 현행 제도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행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면허시험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sup>8)</sup>

## 연구 결과

### 약사면허 시험 제도

우리나라는 약사면허 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약사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Table 1. 약사면허 시험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정성분석학 / 정량분석학 /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 유기약품제조학 / 위생화학 생화학 / 약제학 / 생물학 약물학 / 대한약전 /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없음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국시원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문항개발 등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sup>10)</sup>

현행 약사면허 시험과목은 약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약사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이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면허 시험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등 총 12개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Table 1).

###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 시험도 약사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는 의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sup>12)</sup>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면허 시험도 약사면허 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시원이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은 약사면허 시험의 경우와는 달리 의료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sup>13)</sup> 이처럼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면허 종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보건의약관계 법규는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11개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동일하다.<sup>13)</sup>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에서 특기할 점은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이 다른 의료인면허 시험에 비하여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Table 2). 첫째, 의사면허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치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의사면허 시험은 다양하고 광범한 분야의 의학

**Table 2. 의사면허 시험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총론 (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 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li> <li>• 의학각론 (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 중독, 신생물, 혈액 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 신장 요러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질환, 임상 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질환을 말한다)</li> <li>• 보건의약관계 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li> </ul>	병력청취, 신체질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 적수기

지식내용이 의학총론과 의학각론의 두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다. 셋째, 의사면허 시험의 시험과목인 의학총론과 의학각론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의 명칭 뒤에 괄호를 두어 해당과목에 포함되는 의학지식내용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 있는 점이다. 이 두 과목은 여러 가지 학문이 통합된 시험과목이기 때문에 출제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식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인면허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약사면허 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다만 치과 의사와 한의사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과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과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과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부인과학과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Table 3). 또한 특기할 점은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응시자에게 과중한 시험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마지막 학년차에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파행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은 Table 2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협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응시자에게 과중한 시험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마지막 학년차에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파행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은 Table 2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약사와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의 비교**

현행 법령에서 약사면허 시험과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시험과목의 명칭,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모범인 의료법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다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외는 달리 약사면허 시험은 모범인 약사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Table 4).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되는 제도를 국내외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할 경우 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고 따라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주무부처장관(약사 및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국정을 이끄는 다른 부처장관들과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율을 거쳐야 비로소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발급하는 각종 면허의 국가시험에 대하여 그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계 법령의 시행규칙(부처장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경우 이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점

**Table 3. 기타 의료인면허 시험과목.**

의료인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치과의사	구강악안면외과학 /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과 / 구강악안면방사선학 /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 치과재료학 /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 구강보건학 / 구강생물학 <sup>a</sup> 보건의약관계 법규 <sup>b</sup>	없음
한의사	내과학 / 침구학 / 부인과학 소아과학 / 외과학 /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 본초학 /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 보건의약관계 법규 <sup>b</sup>	없음
간호사	기본간호학 / 성인간호학 /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 보건의약관계 법규 <sup>b</sup>	없음

<sup>a</sup>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 <sup>b</sup>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와 동일(Table 2 참조)

**Table 4.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 제도 비교.**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	의료인면허 국가시험 제도
모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약사법 제8조 4항)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의료법 제9조 4항)
대통령령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 (약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의료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에서 규정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이다. 따라서 약사면허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과락여부(4할 이상 득점 여부)를 판정할 때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은 한 과목으로 간주하는 점이다.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 기초의학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학총론이라는 한 가지 과목으로 묶어 과락 여부를 판정하고, 임상의학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내용도 의학각론이라는 한 가지 과목으로 묶어서 판정하는 점이 그 예이다. 치과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에도 소아치과학과 치과교정학을, 한의사면허 시험의 경우 부인과학과 소아과학을 한 과목으로 묶어서 과락 여부를 판정한다. 과락제도는 보건의료인면허를 받아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검증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약사면허 시험은 기초의학 범주에 속하면서 연관성이 매우 높은 12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각 과락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면허 시험에 관한 국가시험제도로서 유지해야 하는 법령간의 형평성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제조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약사면허 시험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한 과목으로 묶어 과락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서 자리잡은 지 오래다.<sup>15-1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가 다른 보건의료인면허 시험 제도와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약사면허 시험 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앞장 서서 시급히 새로운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에 약사면허 시험 제도에 관하여 국시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등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반영하여 관련제도의 시행규칙 전환, 연관성 높은 지식내용의 과목통합, 2단계 시험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6,18-20)</sup>

### 고 찰

우리나라 약학대학은 2011년부터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었으며 교육내용도 기존의 창약 위주에서 창약과 용약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킬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이는 기존의 약학교육내용이 약사로서의 전문직업 지향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역시 약사직능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sup>21,22)</sup>

다가오는 2015년은 약학대학에서 6년제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는 첫 해이다. 따라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국시원은 새로운 시험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시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약사면허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새

**Table 5.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에 관한 3개 기관 연구결과 비교**

	국시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사국시위원회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험과목	생명약과학 제약산업학 의약품활용·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학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임상응용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기본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시험방법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주요사항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관계법령 개정(법의 형평성)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시험과목별 지식내용 정의 도입 2단계 시험제도 도입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시험과목별 지식내용 정의 도입 2단계 시험제도 도입

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12개 시험과목을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끼리 통합하여 생명약과학, 제약산업학, 의약품활용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학 등 4개 시험과목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6)</sup>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2011년 약사국시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선진형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화 연구를 실시하여 새로운 약사면허 시험의 제도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행 약사면허 시험제도가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나 기타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시험 제도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법의 형평성이 회복되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면허시험을 졸업하는 연도에 일회로 치를 경우 마지막 학년차에 실시되는 실무실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을 2단계로 나누어 치를 것을 건의하였다.<sup>19)</sup>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도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사면허 시험과목을 기본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등 4개로 하고 시험은 2단계로 나누어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국시원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등 3개 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Table 5).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들 3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하는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를 조속히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 론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현행 법령은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에 비하여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관련 규정이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모법의 의료법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다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과락여부를 판정할 때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은 한 과목으로 간주하는데 비하여 약사면허 시험은 12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각 과락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약사가 의료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국민건강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약사면허 2단계 시험실시에 관해서도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GCU-2012-M109)에 의한 결과임.

## 참고문헌

1. 약사국시개선위헌 마지막 토론 열린다(약사공론 2011년 12월 16일자 기사). available at [www.kpanews.co.kr](http://www.kpanews.c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2. 약사국시 대수술: 2단계 도입하고 12 → 4과목으로(약사공론 2012년 6월 14일자 기사). available at [www.kpanews.co.kr](http://www.kpanews.c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3. 국시 개편안 재검토하자: 실무형 약사 배출해야(테일리팜 2011년 12월 16일자 기사). available at [www.dailypharm.com/Users/index.html](http://www.dailypharm.com/Users/index.html). accessed on December 6, 2012.
4. 약사국시 과목개편 연구의 총체적 문제(테일리팜 2011년 10월 17일자 기사). available at [www.dailypharm.com/Users/index.html](http://www.dailypharm.com/Users/index.html). accessed on December 6, 2012.
5.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사시험전문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역과제 보고서: 약사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 연구. 2004.
6. 손의동, 강종성, 권경희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역과제 보고서: 약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2011.
7. 홍후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약사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방안 연구. 2004.
8. 법제처. available at [www.moleg.go.kr/main.html](http://www.moleg.go.kr/main.html). accessed on December 6, 2012.
9. 법률 제11421호 약사법 제4조. available at [www.law.go.kr](http://www.law.g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available at [www.kuksiwon.or.kr/](http://www.kuksiwon.or.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1. 대통령령 제24144호 약사법 시행령 제4조 1항. available at [www.law.go.kr](http://www.law.g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2. 법률 제11141호 의료법 제9조 4항. available at [www.law.go.kr](http://www.law.g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3.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의 별표 1. available at [www.law.go.kr](http://www.law.g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4. 대통령령 제23753호 의료법 시행령 제5조. available at [www.law.go.kr](http://www.law.go.kr).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5. 미국 NAPLEX 웹사이트. available at [www.nabp.net/programs/examination/naplex/](http://www.nabp.net/programs/examination/naplex/).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6. 영국 약사면허시험 웹사이트. available at [www.pharmacyregulation.org/education/pharmacist-pre-registration-](http://www.pharmacyregulation.org/education/pharmacist-pre-registration-)

- training/registration.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7. 캐나다 약사면허시험 웹사이트. available at [www.pharmacists.ca/index.cfm/pharmacy-in-canada/pharmacists-in-canada/](http://www.pharmacists.ca/index.cfm/pharmacy-in-canada/pharmacists-in-canada/). accessed on December 6, 2012.
  18. 유봉규, 조정숙, 사홍기 등.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용역과제 보고서: 선진형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화 연구보고서. 2011.
  19. 유봉규, 이상국, 박기배 등.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용역과제 보고서: 2단계 약사면허 국가시험 도입방안연구 중간보고서. 2012.
  20. 조양연, 이진희, 김대엽.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용역연구 보고서: 약사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 2012.
  21. 제남경, 이인향, 윤정현.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후 약사인식의 변화 및 교육의 효과분석. 한국임상약학회지 2012; 22(2): 143-52.
  22. 민보경. 한국 임상약학은 어디로 달려가는가?: 한국 임상약학 발전을 위한 제안서. 한국임상약학회지 2011; 21(2): 182-7.